

사회진보연대 주간 소식지

사회화와 노동

발행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문의 전화 02-778-4001~2 | FAX 02-778-4006 | E-mail pssp@jinbo.net

정기구독 신청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www.pssp.org)에서 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638호] 정권의 탄압에 맞서 전교조를 사수하자
 - 시정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총투표를 성사시켜야 한다
- [637호] 기초노령연금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 ‘짜퉁’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권의 탄압에 맞서 전교조를 사수하자

- 시정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총투표를 성사시켜야

설립취소 협박과 전교조의 총력투쟁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최후통첩'이라 불릴만한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해왔다. 전교조 규약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해당 규약 개정과 함께 해직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부할 경우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한 달 후(10월 23일) 설립신고를 반려하겠다고 한다.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들은 26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8일 임시대회에서는 역대 가장 높은 70%의 참여율과 2/3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노조설립취소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투쟁본부-지부 체계로 전환한 전교조는 이후 공동대책위 활동과 함께 10월 16~18일 총투표, 19일 전 조합원 집중상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해직자도 조합원이다

해직자도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다수 국가의 교원노조는 해고자 뿐 아니라 구직자, 예비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130여국 중 6~7개 국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이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교원을 비롯해 어떤 직업에서든 한 번이라도 일한 적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독일은 교원과 더불어 교육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행정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는 ILO의 권고와 긴급개입조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보편적 상식임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의 규약시정 요구와 설립취소 반려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과 활동은 한국의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보장된다.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강사노조 등 모든 노동조합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전교조의 규약에 대해서는 트집을 잡아왔지만, 막상 뉴라이프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의 해직자 조합원 신분보장 규약에 대해서는 묵인해왔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를 '이중잣대', '표적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시정명령을 단호히 거부하자

현 정권이 유독 전교조의 규약만을 문제시하고, 벌금도 아닌 설립취소까지 하려는 데에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박근혜 정권은 상

반기 국정원 사태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공안정국을 형성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리며 '종북몰이'를 통해 진보진영을 고립시키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탄압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최근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규약으로 한 설립신고마저도 반려된 공무원노조 사례도 그 중 하나이다.

정권에게 눈엣가시와 같았던 전교조는 최근에도 교학사 친일역사교과서 문제, '특권학교'라 불리는 국제중·자율형사립고 등의 문제에서 정권과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규약을 꼬투리 잡아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후퇴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사학재단의 비리 고발, 진보정당 후원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감을 세우려는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의 사유였던 바, 이번 조치는 이후 전교조 활동을 원천차단하고 실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구상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교조 '표적탄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금은 시정명령을 수용하고 규약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시정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맞서 싸울 때이다.

총투표 조직과정을 조합활동 활성화의 계기로

전교조는 노동부의 시정요구 수용여부를 16~18일 6만 조합원들의 총투표 결과로 최종 결정한다. 보름이 채 남지 않은 시간동안 2백여 개 지회와 수천 개의 분회에서 규약시정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조직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의 지회·분회의 조직력은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총투표를 무너진 지회·분회 활동을 복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전국 2백여 지회와 수천 개의 분회에서는

지회집행부회의, 분회장총회, 분회총회 등 총력투쟁을 위한 조합원들의 토론이 열리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의 과제가 있다.

우선, 규약만 개정하면 한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정세인식을 넘어서야 한다. 법내/법외여부는 총투표의 결과가 아니라 정권의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그 결단을 꺾어놓을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둘째, 정권이 유포하는 법외노조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줄여야 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교섭·협약을 불이행할 경우 노동법상 구제를 받는 등의 노동조합법 상의 보호와 조합비 원천징수, 사무실임대료, 세금혜택, 전임자 휴직 등은 활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단체교섭 체결과 이의 적용, 조합 가입 및 기본적 활동은 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조합원들과 공유하여 법외노조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교조라는 조직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특권학교 문제 등의 '교육운동'의 성격과 교원평가, 성과급 문제 등의 '교사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노동조합으로서,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전교조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토론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자

조합원 인정범위에 대해서 노동부가 개입해 노동조합 설립취소가 되는 전례가 생긴다면, 현재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다른 산별노조에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전교조의 투쟁에 다른 노동조합과 사회운동도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가)교육민주화를 위한 전교조 지키기 긴급행동'에 결합하고, 위원장단 농성장 지지방문, 전교조를 지지하는 학부모·시민선언 등에 동참하며 전교조의 총력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 ‘짜퉁’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이 파기된 것이다.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사과했지만 공약 파기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번 기초연금 계획으로 손해 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불만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이 계획의 주무를 맡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이견을 보이면서 장관직을 사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의 해명과 달리 이번 기초연금 계획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명백한 복지 후퇴 계획이다.

“나는 얼마를 받게 되는 거지?”

이번에 발표된 기초연금 도입계획의 핵심은 간단하다. 우선 지급 대상은 ‘모든 65세 이상에게’ 라는 공약과 달리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들로 현행과 변함이 없다.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급여 역시 ‘모든 대상자에게 20만원’ 이라는 공약에서 후퇴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는다.

기초연금 급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약속된 20만 원에서 차감되며, 201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현재 받고 있는 10만 원만 받아 인상 효과가 전혀 없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함으로써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면 더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이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제도다.

복지부 장관도 설득 못한 국민연금 연계방식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사퇴를 했다. 도저히 이 계획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손해 보는 사람’ 이 없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을 했어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에서 지급한 금액인 1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 말이다. 현재 50세 이하 세대들은 손해를 본다.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될 당시, 국민연금의 급여를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현행 A값(대략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의 5% (약 10만 원)에서 A값의 10%(약 20만 원)로 인상하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으로 정해져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원래 계획되어 있던 인상 시기를 자신의 임기 내인 2017년 내로 단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공약을 파기하고 오히려 현행 계획보다 더 개악된 기초연금 계획을 제출했다. 2028년에 65세가 되는 50세 이하 세대들은 원래 누구나 현재 가치로 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 기초연금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이렇게 복지를 삭감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계획은 인수위 때부터 시작되었다. 게다가 인수위 당시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출처 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지금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기초연금마저 삭감당한다면 노후에 제대로 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인수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2만 명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탈퇴했다. ‘6개월 만에 말 바꾸는데 30년 뒤를 어떻게 믿느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간보험 배불리고, 빈곤책임 개인 전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5.1%다. OECD 평균인 13.5%의 3배가 넘고, 2번째로 높은 아일랜드(30.6%)보다도 월등히 높다. 노인들의 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연금이나 공공부조를 통한 급여)이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OECD 평균 60%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공적 이전 소득이 많아질수록 소득불평등도 완화된다.

그러나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고, 기초연금마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개악될 위기에 처해있다. 게다가 빈곤을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기초생활보장법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낮은 현금 급여 수준으로 인해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나이가 들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연금 정책을 기초했다고 평가받는, 올해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이었던 김용하 교

수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연금 정책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부실해지면 개별 노동자들은 자산을 모으고, 사적 연금에 가입하는 등 투자자로서 적절히 행동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실제로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연금은 공적 연금에 비해 가입자가 되돌려 받는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금융자본만 배불리는 셈이다.

안전한 노후의 권리가 필요하다

공안탄압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고 자신의 핵심 공약을 폐기한 박근혜 대통령은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퇴라는 ‘측근의 배신’에 많이 당황한 기색이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공약을 믿고 투표를 한 노인들의 분노이고, 불안한 노후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이다.

우선 정부는 기초연금 계획을 토대로 만들어질 기초연금 개악법을 폐기하고 최소한 대통령 자신이 공약했던 수준이라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빈곤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통한 보장을 원하는 방식으로 민중을 분할하고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 미래세대에게 불리한 제도 설계로 세대 간 갈등을 만들고 있다. 현재 노인세대와 미래의 노인세대가 될 청장년 노동자 모두에게 노후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야 한다.